

## 1. 개정이유

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설치, 위원장 임명 방법 등 개선(안 제27조의2제2항, 제3항, 제5항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부동산투자회사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#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의2제2항 중 “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30명으로 구성하고, 효율적인 자문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”를 “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한 차례만 연임”을 “연임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